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8 - 47 - 440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8. 9. 4.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 · 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금 액 : 8,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라.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 제53조제1항 및 제54조에 따라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28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며,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의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평 균
매출액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사업개시일 :)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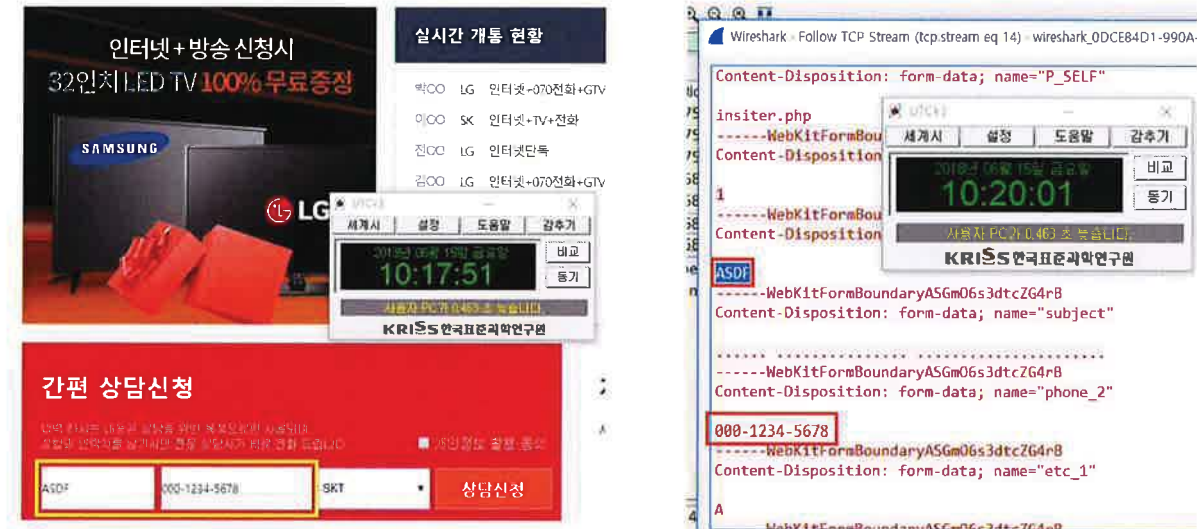
방송통신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2018.5.14.)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2018.6.21.)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 시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이동전화번호 등)를 송수신할 때 암호화 하지 않고 평문으로 이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그림2] 홈페이지 개인정보 전송 패킷 캡처 화면



나.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8. 7. 17.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안)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8. 7. 30.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

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제4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저장·전송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3호, 이하 ‘고시’라 한다.) 제6조제3항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는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제1호), 웹서버에 암호화 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제2호) 전송하는 정보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시 해설서’는 고시 제6조제3항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터넷 구간으로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여야 하며, SSL(Secure Sockets Layer)인증서를 이용한 보안서버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서버에 설치된 SSL 인증서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며, 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한 보안서버는 웹서버에 접속하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암호화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전송시 암호화{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중 암호화}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이 웹서버에 SSL(Secure Socket layer) 인증서를 설치하거나 암호화 응용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송·수신할 때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고시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이다.

< 피심인의 위반사항 >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암호화	§28④4호	§15④3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암호화하지 아니한 행위(고시§6③)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인증정보를 송·수신할 때에는 안전한 보안서버 구축 등의 조치를 통해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제1항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의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지침」(이하 '과태료 부과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 9]와 과태료 부과지침 제6조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이번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1회 위반 과태료인 1,000만원을 적용한다.

〈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 〉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너. 법 제28조제1항(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 제1항제3호	1,000	2,000	3,000

나.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

1) (과태료의 가중)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증거인멸·조작, 허위 정보 제공 등 조사방해, ▲위반의 정도, ▲ 기타 위반행위의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는다.

2)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당사자의 환경, ▲사업규모와 자금사정, ▲개인(위치)정보보호 노력정도, ▲ 조사협조와 자진시정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사업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까지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과태료 산출내역 >

다. 최종 과태료

V. 결론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18년 9월 4일

위원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인)

(국회 참석 관계로 회의 불참)

위원 김 석 진



위원 표 철 수



위원 고 삼 석

